W-3.3.1 검체검사 운영. W-3.3.2 안전한 결과보고 절차

- 검체검사 시행자 : 임상병리사 면허보유 원내직원 (보수교육연간 8점)
- 검체검사 판독자 : 주치의
- 중간보고 대상 리스트
- 1) 배양검사에서 균이 자란 경우 그 균의 그람염색결과
- 2) 장기배양검사 시 초기배양결과에서 균이 자란경우
 - (1) 결핵균검사 (AFB Culture)의 경우 액체배지와 고체배지 동시에 검사 가 시행
 - 액체 배지 : 3주차 중간보고 (6주차 최종보고)
 - 고체 배지 : 4주, 6주차 중간보고 (8주차 최종보고)
 - (2) 혈액배양 검사 : 1일, 3일차 중간보고 (5일차 최종보고)

● 보고방법

- 1) 해당과 의사에게 보고하고 부재 시 해당과 다른 의사에게 유선통보
- 2) 중간결과보고 장부에 환자등록번호, 이름, 검체, 검사명. 수신자, 보고 자 등을 기록
- 3) Ordinary culture(Tip, Wound, Sputum, Urine 등), Blood Culture, AFB Culture의 중간보고는 균이 자랐을 경우에만 보고
- 보고된 검사결과가 변경될 경우
- 1) 결과 수정 시 수정사실을 담당의사에게 유선으로 즉시 통보
- 2) 검사 담당자는 검사결과변경장부를 작성하고 임상병리실장, 진료지원 과장에게 보고 (수정전후 결과, 수정사유 , 수정일시, 결과수정자 기 록)
- 이상검사결과보고(CVR:Critical Value Report)관리
 - 1) 적정진료 위원회에 항목 보고체계 논의후 결정됨
 - 2) 검사자는 처방의 에게 즉시 유선 보고, 반복 측정 및 재검 실시 후 보고한다.
 - 3) 처방의에게 연락이 안되는 경우 해당과의 다른 의사에게 보고한다.
 - 4) 확인되지 않은 결과는 원칙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. 결과확인 전에 전화문의가 오는 경우 "검체 확인중"이라고 답하고 결과는 원칙적으로

- 알려주지 않는다. 신속한 처리로 빨리 조회가 가능토록 한다.
- 5) HIV 가 양성시 담당주치의에게 통보하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, 최종 판정후 보고및 결과 완료.
- 6) 검사결과 Remark 란에 입력하며 Critical Value장부에 기록한다.
- 7) CVR 결과는 매달 1회 임상병리실장은 진료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.

◉ CVR 보고대상

| 진 단 혈 액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|--|--|
| 측정 항목 | Critical Value | 최대 | 최소 | 단위 | | | | |
| WBC | 처음 진단 시에만 적용 | 100,000 | 1,000 | /uL | | | | |
| Hemoglobin | 처음 진단 시에만 적용 | | 6.0 | g/dL | | | | |
| Platelet | 처음 진단 시에만 적용 | | 1,000,0 00 | /uL | | | | |
| 응 고 검 사 | | | | | | | | |
| PT | 처음 진단 시에만 적용 | 58 | | sec | | | | |
| APTT | 처음 진단 시에만 적용 | 110 | | sec | | | | |
| 일 반 화 학 | | | | | | | | |
| Potassium | | 7.0 | 2.2 | mmol/ L | | | | |
| Sodium | | 155 | 110 | mmol/ L | | | | |
| Chloride | | 125 | 70 | mmol/ L | | | | |
| Glucose | | 25 | 1000 | mg/dL | | | | |
| 면 역 혈 청 | | | | | | | | |
| HIV | HIV최종결과가 양성인 경우만 적용 | Positive | | | | | | |
| 혈 액 은 행 | | | | | | | | |
| C r o s s matching | 응급수혈 불출한 후에 시행한 교차 시험 | Positive | | | | | | |
| 임상미생물 | | | | | | | | |
| culture | 배양에서 첫 번째 균 양성일 때 | Growth | | | | | | |

● TAT 관리

- 1) 적정진료위원회에서 TAT 항목, 기준, 보고체계 등을 논의선정
- 2) 정규검사 및 응급 검사를 전체 검사건수에 대한 TAT 관리율 을 확인 하고, 매달 TAT 통계를 산출하여 비교 평가한다.
- 3) TAT 충족비율 95%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4) 임상병리실장은 항목별 검사 소요시간을 검토, 원인 파악 및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여,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진료지원과장에게 보고

W-3.3.3 검사실 안전관리 : 임상병리

- 안전관리자
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3년 이상 재직, 진료지원과장이 임명
- 교육계획
- 1) 안전보건 교육 : 검사실직원 및 채용 시 [년 1회]
- 2) 감염관리 교육 : 검사실 직원 [년 1회]
- 3) 개인 보호구 관련 교육 : 검사실 직원 [년 1회]
- 4) 특별안전교육[MSDS관련교육] 검사실 직원 [년 2회]
- 5)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: 검사실직원 [필요시]
- 검사장비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예방점검을 실시한다.
- 모든 시약의 폐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폐기한다.
- 오염된 물질 닿았을 경우: Spill Kit을 사용하여 처리한다.

● 보호구 착용

| 근무 유형 | 작 업 내 용 | 가 운 | 장 갑 | 고글 | ma sk | 안 전 장 갑 | 신 발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검체취급 | 검체원심분리 | 0 | | | | | 0 | |
| | 검체접수, 보관 | 0 | | | | | 0 | 모든 검체 취급 시 라텍스장갑 착용 |
| | 검체폐기 | 0 | 0 | 0 | | | 0 | |
| 검사업무 | 검체취급 및 검사업무. | 0 | | | | | 0 | |
| | 검체용기 개봉 | 0 | 0 | 0 | | | 0 | |
| | 폐기능 검사 | 0 | 0 | | 0 | | 0 | 결핵균관련 -별도가운착용, 마스크 |
| | 검사장비운용 | 0 | | | | | 0 | |
| | 일반검사 결과확인, | 0 | | | | | 0 | |
| 시 약 | 시약조제 취급 | 0 | 0 | | | | 0 | |
| 채혈업무 | 감염성 환자의 채혈 | 0 | 0 | 0 | 0 | | 0 | |
| | 일반채혈 | 0 | | | | | 0 | Alchol Gel로 소독 |

W-3.3.4 혈액 및 수혈 관리

1. 혈액제제 종류와 관리

| 혈액의 종류 | 보관온도 | 보관기간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전 혈 | 1~6℃ | 35일 | | |
| 농축적혈구 | 1~6℃ | 35일 | | |
| 세척적혈구 | 1~6℃ | 세척 후 24시간 | | |
| 혈소판 농축액 | 20~24℃ | 120시간 | | |
| 신선동결혈장 | -18℃이하 | 1년(해동 후 3시간) | | |
| 여과 백혈구 제거 적혈구 | 1~6℃ | 백혈구 제거후 즉시 | | |
| 여과 백혈구 제거 혈소판 | 20~24℃ | 백혈구 제거후 즉시 | | |
| 성분채집혈소판 | 20~24℃ | 120시간 | | |

- 1) 모든 혈액은 혈액 냉장고에 보관
- 2) ABO RH 표기 분류 보관
- 3) 매일 아침 이상유무 확인
- 4) 혈액냉장고 자동 온도 기록 장치로 온도 점검
- 5) 대체 냉장고 보관시 4시간마다 온도 점검 및 기록
- 6) 수혈관련 검사 검체는 검체 냉장고에 10일 보관
- 7) 헌혈자 관분절 30일 보관

☞ 혈액제제의 수급

- 1) 공급처 : 경기남부혈액원
- 2) 청구절차 : BISS 이용하여 청구한다. http://biss.bloodinfo.net/
- 3) 야간, 재고의 급격한 소진, 응급요청시 본원 앰뷸런스로 **경기혈액원** (공급과 : 031-220-8507) 메트로병원(혈액은행 : 031-467-9943)에

입고지원

☞ 혈액제제 폐기관리

- 1) 혈액전용냉장고에 보관되지 않고시 30분 이상경과 폐기
- 2) 타 의료기관에서 교차시험이 시행된 혈액이 환자와 이송된 경우 폐기
- 3) 폐기신청서에 환자인적사항, 폐기혈액 번호, 폐기일시, 폐기사유를 작성한 후 담당 주치의, 간호사의 서명을 날인하여 폐기혈액과 함께 혈액은행으로 보낸다.
- 4) 부작용 발생 폐기 혈액은 **합성수지류 상자(노란색)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**한다.